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 - 59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5. 2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,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,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소 “마포중앙도서관” 관련 장 및 조문 신설 (안 제4장 제13조부터 제14조)
- 나. 관계 조문 수정 (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2항제28호, 제5장 제15조부터 제17조)
- 다.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(부칙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5. 11. ~ 5. 17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동장”을 각각 “사업소의 장, 동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8호 중 “설립·운영”을 “설립·운영·감독”으로 한다.

제4장(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을 제5장(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으로 하고,

제4장(제13조부터 제14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4장 사업소

제1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.

② 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.

제14조(관장)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의회사무국·보건소·동주민센터”를 “본청·의회사무국·보건소·사업소·동주민센터”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동”을 “사업소, 동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마포구 동주민센터”를 “마포구 사업소·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”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동”을 “사업소, 동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동”을 “사업소, 동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, 본청·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구분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복지교육국) ① (생략)</p> <p>② 복지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7. (생략)</p> <p>28. 도서관 <u>설립·운영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9. ~ 4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업소의 장, 동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 <u>사업소의 장, 동장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복지교육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28. ---- <u>설립·운영·감독</u> ---- -----</p> <p>29. ~ 40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사업소</u></p> <p>제13조(설치) ① <u>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.</u></p>

<신 설>

제4장 동

제13조 · 제14조 · 제15조 (생 략)

제14조(관장) 마포중앙도서관에  
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구청장의  
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 
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
제5장 동

제15조 · 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  
13조 · 제14조 · 제15조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 해당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
연 락 처	02-3153-8216